

실업야구 출범 및 창단 심의/등록 절차 안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문선수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환경에서 야구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2019년도 제10차 이사회에서 실업야구 추진 계획을 심의·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실업 야구팀 창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단 심의 요청 및 등록 절차에 따라 원활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I

실업야구 추진 계획 심의·승인 및 관련 규정

가. 실업야구 추진 계획 심의·승인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2019년 제10차 이사회(2019.11.13.)

나. 등록 관련 규정 : 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

- 제3조 [용어의 정의]

- 1.~11. <생략>

- 12. “실업팀”은 전문선수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운동부를 말한다.

- 제12조 [등록 구분]

- ① 본 협회는 연령(다만, 여령 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 1.~4. <생략>

- 5. 일반부

- ② <생략>

- ③ 일반부는 20세 이상 전문선수로서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등록을 한다.

- 제14조 [등록 자격 및 범위]

- ①~④ <생략>

-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14조 제6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전문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 제21조 [활동 제한 및 예외]

- ①~③ <생략>

- ④ 프로 또는 독립구단에 입단 또는 등록하였던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국군체육부대 예외)

- 제33조 [지도자 등록 자격]

- ① 지도자의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야구 1) 야구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이미 프로 은퇴선수가 선발되어 팀이 운영되고 있거나 지도자 등록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검토 및 협의 가능

※ 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은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 - [야구 정보] - [규정 · 규칙]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장단 심의 요청 및 승인 절차

1) 장단 승인 심사 요청

(팀→시·도 협회→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시·도 협회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

* 상기 외 시·군·구 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해당 사항 없음

2) 장단 승인 통보(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시·도 협회→팀)

나. 등록 절차

1) 전산 및 서면 등록(팀→시·도 협회→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2) 등록 승인(시·도 협회→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3) 등록 완료

- 1) 사업자 등록증(법인 등록증)
- 2) 시·도 협회 장단 동의서 [별첨 양식1]
- 3) 장단이 결정된 회의(이사회, 관련 위원회 등)의 회의록
- 4) 세부 운영 계획서(예산, 연간 훈련 계획, 선수수급 계획 등)
- 5) 운동장 및 연습장 사용 계획
- 6) 지도자 등록 관련 - 자격증 사본, 지도자등록결과사유확인서[별첨 양식2]
- 7) 선수 명단[생년월일, 선수 이력(전 소속, 전문선수 이력 등), 포지션, 배번, 투타 등 포함]
- 8) 소속 지도자 및 선수 재직증명서 사본
-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양식3]

2019년 12월